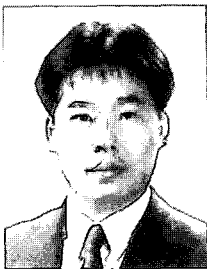


# 2000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안내

본 사업은 '87년부터 산업기술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국내산업의 공통핵심 사항이 있는 기술분야와 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집중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분야중 기업의 자주적 노력만으로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술분야에 대해 정부가 개발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개발결과가 기술적 및 사업적으로 성공하면 정부가 지원한 자금의 일부를 개발완료후 기술료로 상환하는 산업자원부의 기술개발정책중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서 평가 및 관리하는 기술개발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김 상 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선임연구원

## I. 사업내용

### ⊕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산업현장의 공통애로기술 해결을 통한 산업기술력 향상 및 벤처·신기술창업의 적기 시장진입 지원

### ⊕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주력산업의 핵심공정·부품·시스템 등 핵심복합기술들을 산·학·연 협동연구를 통해 5년내외에 일괄 개발

### ⊕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2010년대 미래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핵심기술 및 제품군의 전략적 개발을 통한 지식기반 신산업 창출

### ⊕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 기업, 연구기관 등과의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역할분담을 통한 공동연구를 지원함으로써 단기간내 선진기술의 습득 도모

### ⊕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민·군 양분야에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연구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연구성과의 상호효과를 유도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

## II.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공통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산업현장의 단계적 공통애로기술을 해결함으로써 산업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적기 시장진입 지원
- 총사업비의 2/3까지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시 정부지원금의 30~50%를 기술료로 징수

◆ 추진계획

- 99년도 이전에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이미 개발진행중인 547개 계속과제에 대하여 480억원 지원
- 산업현장의 공통 핵심과제 해결 및 신기술·벤처창업을 위한 기술개발과제에 380억원 지원
  - 국산화 시급기술 등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술과제를 공모하는 자유응모과제에 300억원 지원
  - 「특허사업화협의회」에서 심의·선정한 우수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30억원 지원
  - 대학·연구소에서 창업가능기술을 개발(1차년도)하고 적정 기업을 발굴하여 사업화를 공동추진(2차년도)하는 spin-off사업에 40억원 지원
  - 산기반 우수과제의 후속기술개발사업에 10억원 지원

◆ 추진일정

〈계속과제〉

- 年中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수시 지원

〈신규과제〉

- 2000. 3월 : 제1차 신규지원분야 공고

- 중분류 핵심기술분야, 특허사업화분야
- 2000. 4월 : 사업계획서의 신청·접수 및 심의·선정
  -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원 (2000. 5월~6월)
- 2000. 6월 : 제2차 신규지원분야 공고
  - spin-off분야
- 2000. 7월 : 사업계획서의 신청·접수 및 심의·선정
  - 협약체결 및 개발사업비 지원 (2000. 8월~9월)

중기거점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선진국이 기술이전을 기피하는 주력산업의 핵심요소기술, 핵심부품 및 복합시스템을 산·학·연 공동으로 중기(5년내외)에 일괄개발하는 기술개발사업
  - 기존 주력산업의 기술집약화 및 고부가가치화 도모
- 총개발비의 2/3까지 정부가 지원하고, 성공적으로 완료된 과제에 대하여는 정부지원금의 30~50%를 기술료로 환수

◆ 추진계획

- 「디지털 X-ray 영상진단장치 개발사업」 등 29개 계속과제에 570억원 지원('99년 지원수준)
- 「부품·소재기술개발 5개년계획」에서 도출된 신규과제에 350억원 지원
  - 부품·소재분야의 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여 세계 일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
- 산업국의 업종별 산업분석을 통하여 도출

된 전략과제에 100억원 지원(일반회계 50억원 + 기술료 50억원)

- 신규과제 도출방식을 개선하여 전략성·정책성 보장

☑ 추진일정

〈계속사업〉

—연중평가후 계속판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신규사업〉

- 2000. 2월~5월 : 품목담당과에서 과제도출 및 연구기획
- 2000. 6월~7월 : 공고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자 공모
- 2000. 8월 : 신규지원대상과제 심의 및 선정
- 2000. 9월 : 신규과제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품목담당과-총괄관리기관)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 사업개요

- 협력 대상국과 협정체결 등을 통해 국가간 협력체제를 구축한 후 상대국의 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과 공동으로 실용화 기술개발과제를 도출하여 지원
- 기술선진국 추종 기술개발전략에서 대등 혹은 추월 기술개발전략으로 수정키 위해 국제공동연구 강화 필요

☑ 추진계획

- “산소 부하 연소시스템 및 핵심부품개발” 등 37개 계속과제에 38억원 지원
- 생산기술 등 우리의 강점분야를 토대로 외국과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협정체결 및 공

동기금 조성 지원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연구개발기금 출연 : 12억원

—국제 기술개발 콘소시움 참여 지원

- 차세대 자동화 생산시스템(IMS) 개발사업 참여 지원 : 10억원

※ 향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은 국가가 중개역할을 하여 성사시킨 과제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등 전략성 강화

☑ 추진일정

—37개 계속과제는 연중평가후 계속판정과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한·이스라엘 산업기술협력기금 운용사업
  - 2000. 2월 : 재단설립
  - 2000. 3월 : 양국 희망기술개발과제 수요조사
  - 2000. 4월 : 수요조사에 근거한 양국 기업간 중개
  - 2000. 5월 : 공동사업계획서 준비
  - 2000. 6월 : 공동기술개발과제 사업계획서 자유응모
  - 2000. 7월 : 사업계획서 심사 및 신규과제 확정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민·군 양 분야에 공통으로 필요한 핵심기술의 공동개발을 통하여 산업경쟁력과 안보역량을 동시에 제고
- 민과 군간 기술이전을 확대하고, 민수·군수시장으로의 상용화 지원
  -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위해 개발초기단

- 계부터 산업체 참여 의무화
- 총개발비의 70%~80%를 정부가 지원하고, 기술개발후 성공과제에 대해서는 매출발생시점으로부터 8년이내에 정부 출연금의 50%이상을 징수

☐ 추진계획

- 민·군 양 분야에 수요가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도출이 가능한 개발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 지원
- “초음파를 이용한 수중 영상정보 전송기술 개발” 등 19개 계속과제에 65억원 지원
- “Web 기반의 제품정보 통합관리 기술개발” 등 4개 신규과제에 10억원 지원

☐ 추진일정

〈 계속사업 〉

- 2000. 5~7월 : 계속과제평가, 협약체결 및 지원

〈 신규사업 〉

- 2000. 1월 : 2000년도 사업시행계획 공고
- 2000. 3월 : 신규과제 접수 및 평가·선정
- 2000. 6~8월 : 2001년도 신규과제 수요조사
- 2000. 7~12월 : 기술이전대상 조사와 민수화 및 군수화 기술이전대상 설명회 개최 및 홍보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지식집약 신산업으로서 2010년대 산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는 미래유망 핵심기술 및 제품을 전략적 개발

- 차세대 주요성장산업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거나 기존 시장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높은 핵심기술로서
- 기술개발기간이 장기이고, 투자규모 및 위험도가 커서 정부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한 기술분야를 집중 지원

- 총개발기간을 3단계로 구분하여 1단계에서는 총사업비의 100%까지 지원하되 기술개발 진척도에 따라 민간부담율을 상향조정하는 방식으로 개발위험을 분담

☐ 추진계획

- “차세대 대용량 정보저장장치 개발” 등 7개 계속과제에 150억원 지원
- 2000년 신규과제는 『2010년 산업기술예측조사(98.6월)』 및 『산업기술개발 5개년계획』에서 도출하여 100억원(일반회계 50억원 + 기술료 50억원) 지원
  - 신규사업은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기술개발의 시급성, 관련 산업에의 파급효과 등을 감안하여 5개내외의 과제를 선정

☐ 추진일정

〈 계속사업 〉

- 연중평가 실시,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원

〈 신규사업 〉

- 2000. 2월 : 신규 지원대상과제 수요조사
- 2000. 3~5월 : 신규지원대상과제 사업제안서(RFP)작성
- 2000. 6~7월 : 공고과제 선정 및 과제수행자 공모
- 2000. 8월 : 신규지원대상과제 심의 및 선정
- 2000. 9월 : 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